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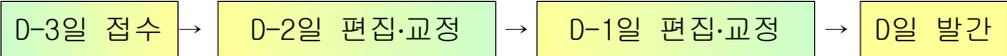
제1571호 2009. 9. 22.

공 고

제2009-74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2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74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22일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매인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 거리측정방법 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소매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안 제3조)

1)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함.

2) 신축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는 신축 건물 완공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보존등기 등 점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

나. 소매인 지정기준(안 제4조)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써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 라)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다.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안 제5조)

- 1)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야간에 주로 영업하는 업소 등에는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음.

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안 제6조)

-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함.
- 2)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우:131-701, 전화:02)490-3365, FAX:02)490-3656, E-mail : ejjo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지역경제과(☎490-33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